



JUL. 2019 발간년월 2019년 7월(통권 제31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발행인 양창호 원장
Vol. 31 감리 황진희 본부장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홈페이지 www.kmi.re.kr

금주 Contents - 해사안전 이슈

IMO, 자율운항선박(MASS) 임시운항지침 승인과 법령작업

IMO는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[2019.6.5~6.14]를 개최하고 자율운항 선박(MASS) 시범운항을 위한 해상 시운전 지침 초안을 마련함

■ 자율운항선박(MASS) 시범운항 지침 개발을 위한 9개 주요원칙, 지침서 개발 논의배경과 경과^{a)b)}

- 지난 2018년 12월에 개최된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자율운항선박(MASS,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) 임시운항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9개 원칙*을 채택했으며, 한국과 노르웨이 및 호주 등은 비공식 작업반을 구성하여 이번 회기 전까지 지침서 개발 작업을 해왔음
- 그러나, 노르웨이 주도로 작업한 임시지침서에 대하여 시간 제한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호주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됨
- 우리나라는 금번 회기에 통신작업반에서 작업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호주 등과 협력하여 임시적인 시범운항 지침의 초안을 완성하게 되었음

* 임시지침 개발을 위한 9개 주요원칙

- 1) 산업계와 정부의 통일된 단일지침서를 개발
- 2) 통상적인 일반사항을 고려한 지침 개발
- 3) 기술적인 상세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개발
- 4) 목적기반기준개발(GBS) 방법과 절차를 활용한 지침 개발
- 5) 정보의 공유(IMO와 이해당사자에게 지침개발 관련 정보공유)
- 6) 시운전 실시보고 (특정지역에서의 시운전 정보를 모든 선박에 공유, 시운전 실시에 대한 사항을 관련 연안국의 보고)
- 7) 사고예방조치 (시운전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운항을 고려한 지침서 개발)
- 8) 강제규정의 준수 (시운전 선박이 IMO 강제협약의 규정범위를 준수하도록 지침 개발)
- 9) 시운전의 범위를 설정 (항해, 새로운 장비를 탑재하는 등 수행되는 시운전 특별사항에 대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지침 개발)

■ 자율운항선박(MASS) 시범운항지침 초안 승인 의미와 내용

- 9개 주요개발 원칙에 입각한 자율운항선박(MASS) 지침은 큰 틀에서 시범운항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할 수 있음
- 장비, 시스템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 골자를 기술한 지침이며 자율운항선박 운항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당국과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와 동시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
- 특히, 해상 시운전 시에 위험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, 비상계획 및 후속조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
- 또한 자율운항선박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구분된 자율운항등급에 따라 2단계 이하로 승선자가 있을 경우, 승선자에 대한 훈련요건은 해상안전인명협약(SOLAS) 및 선원의 자격과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(STCW)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준용하고 원격운항자(Remote Operator) 요건만을 이 지침에서 다루고 있음
- 추가로 인프라, 통신 및 데이터교환, 보고사항 및 정보공유, 사이버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침에 반영되었음

■ 자율운항선박(MASS) 시범운항 지침* 주요내용^{c)d)}

- 시범운항 지침 초안은 제1장 2개절(소개, 범위와 적용), 제2장 10개절(리스크 관리, 범위와 적용, 시험관련 인력 및 자격요건, 인적요소, 시험시행을 위한 인프라, 시험의 인지, 통신 및 데이터 교환, 보고 요구사항 및 정보공유, 개별적 시험수행의 범위, 사이버 위험관리)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

*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지침(목차)

1. 소개
 - 1.1. 목적(Aim)
 - 1.2. 범위 및 적용(Scope and Application)
2. 원칙과 주요목표(Principle and main objectives)
 - 2.1.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
 - 2.2. 범위 및 적용(Scope and Application)
 - 2.3. 시운전과 관계된 인원의 구성 및 자격(Manning qualifications of personnel involved in MASS trials)
 - 2.4. 인적요소(Human element_including monitoring infrastructure and human–system interface)
 - 2.5. 시범운항의 안전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(Infrastructure for safe conduct of trials)
 - 2.6. 시범운항의 인지(Trial awareness)
 - 2.7. 통신 및 데이터 교환(Communications and data exchange)
 - 2.8. 보고 요구사항 및 정보공유(Reporting requirements and information sharing)
 - 2.9. 개별시험의 시행범위(Scope for each individual trial to be conducted)
 - 2.10. 사이버 위험 관리(Cyber risk management)

자율운항선박(MASS) 적용을 위한 현행 IMO협약 검토 작업

■ IMO 제105차 법률위원회(LEG) 법령검토 작업결과^{e)}

- IMO 법률위원회도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소관협약*에 대하여 확정하고 법률위원회 차원의 협약규정검토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작업에 들어감
 - * 법률위원회 소관협약 : BUNKER, CLC, FUND, NUCLEAR, PAL, LLMC, SUA, SALVAGE NAIROBI, HNS
- 작업방법에 대하여 해사안전위원회 자율등급 4등급과 2단계(협약검토, 결과분석)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최종검토가 이루어져 차기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협조를 요청함

<표 1> 법률위원회 규정 검토 작업(RSE) 체계

구분	LEG RSE 작업	MSC RSE 작업
자율화 등급	MSC와 동일	<p>Degree one. 자율주행을 위한 부분적 자동화 및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선박 (1단계)</p> <p>Degree two.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(2단계 – 시스템 고장시 선원이 대응)</p> <p>Degree three.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(3단계 – 시스템 고장을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이 구축됨)</p> <p>Degree four. 완전 자율주행선박 (4단계)</p>
방법론 1단계 (협약 검토)	MSC와 동일	<p>A. MASS에 적용되고, MASS의 운용을 방해하는 규정</p> <p>B. MASS에 적용되고, MASS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 규정</p> <p>C. MASS에 적용되고, MASS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지만 명확화 또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</p> <p>D. MASS 운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</p>
방법론 2단계 (1단계 결과 분석)	I. 통일해석 개발 II. 현재 협약 개정 III. 새로운 협약 개발 IV. 분석의 결과로서, 해당사항 없음	<p>I.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동등규정 또는 통일해석 개발</p> <p>II. 현재 협약 개정</p> <p>III. 새로운 협약 개발</p> <p>IV. 분석의 결과로서, 해당사항 없음</p>

<표 2> 법률위원회 작업절차 및 일정

구분	작업내용	비 고	일정
1단계 (협약 검토)	초기문서작성	회원국 자발적 참여	2019.5월
	코멘트 제출	전 회원국	2019.6월~7월
	초기문서 및 코멘트 검토	회원국 자발적 참여	2019.6월~7월
2단계 (1단계 결과 분석)	초기 분석	회원국 자발적 참여	2019.9월
	코멘트 제출	전회원국	2019.10월
	초기분석 및 코멘트 검토	회원국 자발적 참여	2019.11월~12월
	최종검토	LEG 107	2020.3월

■ IMO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(MSC) 법령검토 작업 결과

- 제100차부터 현재 진행 중인 협약의 제·개정 소요에 대한 작업방식 등을 논의하고 작업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하고 제1단계 작업결과는 개발된 양식에 따라 2019년 9월에 개최될 회기간 작업회의('9.2-9.6)에 제출하여 논의될 예정임
- 제100차 회의시에 각 회원국별로 담당했던 사전 초기검토내용 결과를 기반으로 일정에 따라 제2차 검토가 회기간 작업반 회의이전에 수행될 예정임
- 또한,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협약에 대하여 회기간 회의 작업 목표를 설정함
- IMO 협약 초기검토 관련 코멘트 단계(1단계)는 2019년 7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제 2단계 코멘트와 관련 분석내용은 최종심의를 위해 제102차(2020년)에 제출될 예정임

■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지침 개발과 법령식별작업(RSE) 진행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운·조선 산업과 관련 산업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R&D사업 적극 촉진 필요

- 한진해운 파산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, 산업계, 관련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
- 현대상선의 “디 얼라이언스”가입에 따라 재도약 기반은 마련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운임경쟁력 확보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추진해야 할 것임
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(AI), 스마트화, 디지털화 트렌드에 적응 및 선도하지 못한다면 해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, 우리나라 해운·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시점임
-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, 현재 IMO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(MASS) 관련 논의와 기술개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재도약 기회가 될 수 있음
- 따라서 자율운항선박(MASS)의 선도적 대응과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자율운항 선박을 활용한 해운산업과 조선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적 시장점유에 사활을 걸어야 함
- 따라서 IMO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우리나라 정부의 선도적 자율운항선박의 정책 및 기술표준 개발과 더불어 대형 R&D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

박한선 연구위원

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(hspark@kmi.re.kr / 051-797-4627)

-
-
- a) IMO, MSC 101/5/5, Interim guidelines for MASS trials
 - b) IMO, MSC 101/5/6, Comments on documents MSC 101/5/5 and MSC 101/INF.17
 - c) IMO, MSC 101/WP.8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(MASS)
 - d) IMO, MSC 101/WP.9, Draft Report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on its 101st Session
 - e) IMO, LEG 106/WP.5, Regulatory Scoping Exercise and Gap analysis of conventions emanating from the legal committee with respect to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(MASS)

참고자료